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중교통의 속성상 대부분의 국민에게 ‘door-to-door’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환승(갈아탐)이 발생하므로, 환승편의 개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핵심 사항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04만 광역통행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 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이용편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환승센터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시행 사업의 국고보조 허용 및 관할 외 해당 시설 주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타 광역교통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단,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는 70%) (안 제12조제1항제4호)

* 광역철도 70%, 도시철도 60%, 광역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50% 지원 중

나. 환승센터 등 사업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2조제2항)
다. 수익자 부담, 지자체간 상호협력 등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환승센터
등 사업비 부담시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 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는 7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은 국고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u>30퍼센트</u>	4. ----- ----- ----- 50퍼센트, 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는 70퍼센트
<u><신 설></u>	②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u><신 설></u>	③ 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은 국고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12